

■ 하청생산 납품,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[필수공정 미이행]

☞ < 모든 품목 > 직생 취소 및 < 6개월 > 신청 제한

✓ 사례1) 타사에서 일부 필수공정 수행

A사는 타사에서 일부 필수공정을 통해 생산한 부품을 납품받아 생산 조립 후 공공기관에 납품

✓ 사례2) 직접생산 미확인(또는 반납한) 공장 생산

B사는 최초 ○○ 주소지에 소재한 생산공장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으나, 수요기관의 납품 시에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아니한(또는 반납한) 타 지역의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

✓ 사례3) 타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활용

C사는 타사의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자사 직원이 생산한 물품을 납품
C사는 타사의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자사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

✓ 사례4) 타사 완제품 구매 납품

E사는 생산시설의 고장으로 인해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

✓ 사례5) 타사 상표 부착

D사는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타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

■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하청생산 등

☞ < 모든 품목 > 직생 취소 및 < 6개월 > 신청 제한

✓ 사례1) 수요기관이 호환성, 규격, 긴급 등의 사유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납품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하청생산

A사는 수요기관이 호환성을 사유로 특정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타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

※ 그간 법원은 일관되게 수요기관의 요구로 하청생산(완제품 구매)하여 납품한 업체에 대한 직생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

→ 조달청,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에 민원제기 등을 통해 해결 해야

직접생산확인 제도란?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(213개)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 제조업만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및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 중소기업지원제도
→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납품하면 처분대상이 됨
-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: 승인일로부터 2년
- 재신청기한 :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
- 근거법령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

직접생산확인제도 관련 기관 안내

■ 직접생산확인 신청 · 발급

중소기업중앙회	02-2124-3380
---------	--------------

■ 공공구매정보망(SMPP) 회원가입, 공공구매론 등

중소기업유통센터	02-2656-9991
----------	--------------

■ 중기간경쟁제품의 공공기관 발주 미이행 : 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중기청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

이렇게 하면
직접생산확인 **위반**

안돼요~~안돼!!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

직접생산 위반 사후관리 안내

-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수요기관 등에서 하청생산 등 직생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직접생산 확인·취소 등 행정처분 수행
- 또한 정기적으로 직접생산확인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
- 조달청에서는 납품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생 위반 조사를 수행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생산확인 취소를 요청
→ 공공기관 납품시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구

하청생산 등 직접생산확인 위반시 처분

- 판로지원법 : 직생 취소 및 신청제한, 과징금 부과 처분
- 국가계약법 등 : 부정당업자 제재
 - 해당 품목 계약해지 및 다른 품목 거래정지
 - 계약보증금 환수 등
 - 타사 완제품 구매 납품 및 하청생산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
- 기타(대외무역법 등) : 사기, 과징금 등의 제재 대상

위반 사항별 처분내용 (판로지원법)

위 반 사 항	취소대상	신청제한
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	모든품목	12개월
② 생산설비의 임대,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(중기간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30일 이내 직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)	해당품목	6개월
③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,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	모든품목	6개월
④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	모든품목	6개월
⑤ 개인사업자 대표 변경, 공장이전, 영위사업의 양수 양도, 합병 (포괄양수양도 제외)의 경우 (30일 이내 직생을 재신청 하지 않은 경우)	해당품목	3개월 이내



위반 사례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

< 모든 품목 > 직생 취소 및 < 12개월 > 신청 제한

☑ 사례1) 타사 생산시설 활용 직접생산확인 취득

A사는 ○○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여 동일 주소지에 소재한 B사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○○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음

☑ 사례2) 제출서류 위조를 통한 직접생산확인 취득

C사는 ○○ 제품에 대해 기존 인력 충족을 위해 생산인력이 충족된 것으로 4대보험 가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 받음

- 생산설비의 임대,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후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30일 이내 직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

< 해당 품목 > 직생 취소 및 < 6개월 > 신청 제한

☑ 사례1) 생산시설 일부 매각

C사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생산공장의 생산시설 중 일부를 타사에 매각 후 공공기관에 생산 납품

☑ 사례2) 동일 소재지 복수 공장

D사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공장을 분할하여 일부 면적을 타사에 임대하면서 격벽을 설치하지 않고 30일 이내 직생 반납처리 하지 않음

☑ 사례3) 근로자의 퇴사

E사는 경기불황으로 근로자가 퇴사하여 직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공공기관에 생산 납품

※ 조달청에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계약업체의 근로자 4대보험 자료 등을 통보 받아 직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치 못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소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바 각별히 주의요구

→ 이미 받은 직생을 반납처리하고 확인기준을 충족 후 재신청 해야 행정처분 (6개월 신청제한 처분 등)을 면할 수 있음